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69

발의연월일: 2021. 7. 6.

발 의 자:이용호·양정숙·박상혁

김수흥 • 한병도 • 이상헌

김예지 · 최인호 · 황운하

김민철 • 민병덕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콩, 포도, 양파, 마늘, 고구마, 양배추, 감자(가을재배)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%를, 지방자치단체가 15~40%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중에 있음.

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,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. 즉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임.

이에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, 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내실을기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범위를"을 "범위 및 가입 대상 품목을"로 한다.

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신규 보험상품으로 도입하여 5년 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수입보장보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험상품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수입보장보험[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생산자의 조수입(粗收入)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]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정부가 인정하고 판매하도록 한 보험상품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보상의 범위 등) ① (생	제6조(보상의 범위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	②
하는 재해의 <u>범위를</u> 확대하기	<u>범위 및 가입 대상</u>
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품목을
제27조(시범사업) ①・② (생	제27조(시범사업) ①·②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재해
	보험사업자가 신규 보험상품으
	로 도입하여 5년 이상 시범사
	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보험상
	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도록
	하여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
	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